

【 6 】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1. 20.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폐지이유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역의료보험조합과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업무를 수행토록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97.12.31 법률 제5488호)98.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 종전의 지역의료보험에 의하여 설립된 양주군지역의료보험조합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과 동시에 해산되었기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동조례를 폐지함.

□ 주요골자

- “동조례 폐지”

양주군조례제 호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

[1997. 1. 13]
조례 제1604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 읍·면 및 토·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지원사항) ①군수 및 읍·면장(읍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읍·면사무소에 의료보험조합지소(이하 "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지원
2.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의 협조
3.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상실업무가 척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입 신고시 관련 공부의 이송 요청 협조
4.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천역, 출생, 사망, 시설등의 수용 및 퇴소현황 협조

②리·반장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소재 과악과 자격확인 업무에 협조한다.

③군수 및 읍·면장은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 조(운영규정 제정등) ①군수는 읍·면지역의료보험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일무에 관한 사항
2. 협의회의 소집·의결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결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읍·면장은 의료보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조(공무열람 등) 읍·면장은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해 주민 등록표,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8편 사회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

제5조(비밀의 유지) ① 지소 직원은 의료보험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채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읍·면장은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에
게 통보하여 의료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복무관리) 읍·면장은 지소 직원의 복무상황을 의료보험조합 대표이
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 1. 13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國民醫療保險法 制定理由.

醫療保險制度은 保険料率 是社財源으로 하여 醫療保護對象者를 제외한 全民의 기본적인 醫療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制度임에도 職場醫療保險은 累積積立金을 보유하고 있는 優點, 低所得 國民 대半분이 포함된 地域醫療保險은 優性的인 赤字構造로 인하여 欠乏兆頭(1998년도 豐算)의 職場補助로 환상유지율 하고 있는 실정으로 醫療保險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제소하기 위하여 모든 醫療保險을 統合하여야 하므로 그 첫段階로서 新設되는 國民醫療保險管理公團이 現行의 公務員 및 私立學校 教職員醫療保險管理公團과 地域醫療保險相合 일부를 基礎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시적 統合으로 일한 集團간의 競爭을 최소화하면서 終전적으로 統合運營 方式의 醫療保險制度를 도입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1. 이 法에 의한 醫療保險의 被保險對象은 公務員·教職員·地域被保險者로 하여, 保險者는 國民醫療保險管理公團으로 하며, 公團에 理事長, 常務理事 3人外 理事 4人·要職事 1人의 任員을 두(法 第5條·第9條·第16條).
2. 廉費扶助期間은 年間 300日이상으로 하여 人統領金으로 정하고 65歳이상의 者, 殘障人, 國家有功者, 肺結核者로 廉費扶助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廉費扶助期間을 제한하지 아니함(法 第27條).
3. 公務員 및 教職員의 保險料額은 각 月에 대하여 被保險者の

報酬月額에 1000분의 30 배나 1000분의 20의 増減한데서 人統領金으로 정하고 保險料率를 增減하여 받은 額으로 하여 地域被保險者の 保險料額은 被保險者が 속하는 世帶의 保險料賦課標準에 따라 人統領金이 정하는 等級區分에 의하여 公團 定款이 정하고 之에으로 하여, 島嶼·僻地, 農漁口 등 人統領金이 정하는 地域에 居住하는 被保險者와 國外 등에서 居住하는 公務員·教職員被保險者에 대하여는 保險料率 減免를 수 있도록 함(法 第47條·第48條).

4. 公務員의 被保險者の 保險料率는 被保險者外 政府가 차기 保險料額의 100분의 50을 부과하고, 教職員의 被保險者の 保險料率는 被保險者·學校經營者 및 政府가 차기 保險料額의 100분의 50·100분의 30 및 100분의 20을 부과하고, 地域被保險者の 保險料率는 世帶主 또는 被保險者が 그 全額을 부과함(法 第49條).

5. 構庫는 每年度 豐算의 명원안에서 人統領金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民醫療保險管理公團에 대하여 醫療保險事業에 필요한 費用의 額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法 第55條).

6. 公團은 公務員·教職員被保險者와 地域被保險者の 財政을 按分 관리하여야 하며 保健福利部長官의 승인을 받아 會計規則를 정하여야 함(法 第69條).

7.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醫療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域醫療保險組合와 公務員 및 私立學校 教職員醫療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公務員 및 私立學校 教職員醫療保險管理公團은 이 法 施行과 동시에 解散되는 것으로 봄(法 附則 第3條)··· 但지자 사용·